

미래지식교육원 학점은행제 장학제도 안내

2020.12.08.

■ 미래지식교육원 학점은행제 장학규정 제3장 제5조 (자격) ① 장학금을 수혜하는 학습자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
1. 매학기(직전학기 및 당해학기) 6과목 이상 수강하는 자
2. 직전학기 성적 평점이 2.0 이상인 자

②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자는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.

1. 학칙에 의거하여 징계를 받은 자
2. 8학기를 초과한 자
3. 장학금 지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

구분	장학명	대상	혜택	선발 및 지급방법	제출서류	비고
성적장학	성조	•평점 4.2 이상 •전공별 재학생 150명 당 1명	다과목장학 감면 후 수강료의 70%	•전공 선발(석차순) •개강 후 계좌 지급	•통장사본(본인명의)	재학생
	신조	•평점 3.9 이상 •전공별 재학생 100명 당 1명	다과목장학 감면 후 수강료의 50%			
	의조	•평점 3.6 이상 •전공별 재학생 30명 당 1명	다과목장학 감면 후 수강료의 30%			
기타	평생학습	•전공별 1명 •만 40세 이상인 전공 최고령자 •과거 평생학습장학을 수혜한 사실이 없는 자	30만원	•전공 선발 •개강 후 계좌 지급	•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•통장사본(본인명의)	재학생
공로장학	공로	•전공 학생회 회장 1인 •학년대표(학년별 1인)	•학생회장 : 다과목장학 감면 후 수강료의 50% •학년대표 : 20만원	•전공 추천 •수강료 감면	-	신입생, 재학생
	특별	•미래지식교육원 발전에 공헌하거나 명예를 높인 자 •기타 특별한 사유로 장학금을 지급할 사유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	원장이 정함	•전공 추천 •수강료 감면	추천서	재학생
근로장학	근로	•일정시간 근로를 제공한 자 •이론전공 학기2인, 방학1인 •실습전공 학기3인, 방학1인 •행정실 인원은 행정실에서 별도로 정함	•다과목장학 감면 후 수강료의 100% (단, 8과목 이상 수강 시 [8과목 총 수강료]-[전공별 기준금액+가장 낮은 수강료] 납입해야 함)	•전공 추천 •수강료 감면	장학금신청서	신입생, 재학생
저소득층	복지	•기초생활수급자	다과목장학 감면 후 수강료의 30%	•본인 신청 •수강료 감면	•장학금신청서 •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(1개월 이내 발급)	•이중수혜 허용 •신입생, 재학생
장애인	가난지기	•경증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자 - 가난지기 1급 : 중증 이상(1~3급) 장애 학생 중 차상위계층 - 가난지기 2급 : 경증 이상(4~6급) 장애 학생 중 차상위계층	•1급 : 50만원 •2급 : 30만원	•본인 신청 •수강료 감면	•장학금신청서 •차상위계층증명서 •장애인증명서(1개월 이내 발급)	•이중수혜 허용 •신입생, 재학생
기타	건국가족	•부모 중 1인과 자녀, 형제, 자매, 부부가 미지원 학점은행제 동일 학기에 재학 중인 자 •본인이 건국대학교, 건국대학교 대학원, 미래지식교육원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한 자 •부모가 건국대학교, 건국대학교 대학원, 미래지식교육원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한 자	1인 30만원	•본인 신청 •수강료 감면	•장학금신청서 •직계가족의 학점은행제 동시수강 -등록금고지서, 가족관계증명서 •본교 졸업생·졸업증명서 •본교 졸업생의 자녀·졸업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	•이중수혜 허용 •재학생

구분	장학명	대상	혜택	선발 및 지급방법	증빙서류	비고
기타	교직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본교에 재직 중인 교(직)원 본인과 자녀 및 배우자 •퇴직 시, 입학 전공의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지급함 •계약직원의 경우 본인에 한하며, 퇴직 시 퇴직일이 속한 학기까지 지급함 •교(직)원 본인은 장학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음 •교(직)원 자녀 및 배우자는 장학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본인 및 자녀 : 전액 •배우자 : 다과목장학 감면 후 수강료의 50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본인 신청 •수강료 감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장학금신청서 •재직증명서 •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, 자녀만 해당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신입생, 재학생 •동물병원 포함 •기존 대상자 : 신청서만 제출
	일감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산하기관에 재직 중인 임직원 본인과 임직원의 자녀 (계약직원 제외) •퇴직 시 퇴직일이 속한 학기까지 지급함 •산하기관 임직원 본인은 장학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음 •산하기관 임직원의 자녀는 장학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본인 : 전액 •자녀 : 다과목장학 감면 후 수강료의 50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본인 신청 •수강료 감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장학금신청서 •재직증명서 •가족관계증명서(자녀만 해당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신입생, 재학생
	장애부모 학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부모가 경증 이상(6급 이상) 장애가 있는 자 	30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본인 신청 •수강료 감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장학금신청서 •가족관계증명서 •장애인증명서(1개월 이내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신입생, 재학생
	단체 및 기관특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해당 학기 등록기간 기준으로 협회, 학회, 센터, 교육기관 등 공인된 단체 및 기관 소속으로 10명 이상 동시에 등록한 자 	다과목장학 감면 후 수강료의 1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본인 신청 •수강료 감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장학금신청서 •재직증명서, 회원증명서 등 단체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신입생, 재학생
	공무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해당 학기 등록기간 기준으로 군·경·소방 공무원 등을 포함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(공기업 제외) 	다과목장학 감면 후 수강료의 1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본인 신청 •수강료 감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장학금신청서 •재직증명서 •건강보험증실확인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신입생, 재학생
	사회적 특별 배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학력인정 대상학교를 졸업한 자 	다과목장학 감면 후 수강료의 1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본인 신청 •수강료 감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장학금신청서 •고등학교 졸업(예정) 증명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신입생, 재학생
국가기관	보훈장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보훈대상자 본인, 배우자 - 조건 없음 •보훈대상자의 (손)자녀 - 직전학기 평균성적 70점 이상(미만이면 제외) - 학사 168학점 이내 	수강료의 10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본인 신청 •수강료 감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장학금신청서 •본인-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•손자녀-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증명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기존 대상자도 서류 필히 제출 •신입생, 재학생
	북한이탈 주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(고졸 검정고시 합격, 시·도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북한 학력 인정 등)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•자녀인 경우 : 93.12.11 이전 출생자만 신청 가능 •160학점 이내 	수강료의 10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본인 신청 •수강료 감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장학금신청서 •교육지원보조금 지급신청서 •교육지원대상자 성적통지서 •학력인정증명서(시도교육청발급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기존 대상자도 서류 필히 제출 •재학생